

주택에서영업교습의영업보상대상여부:영업보상대상해당

○(판단)공익사업지구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,허가 등을 하고 영업을 하였다면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고,○○시 ○○교육청 교육장이 발급한 ‘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’에 따르면,교습장소가 신청인의 집(○○ ○○구 ○○동183-15번지2층)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,신청인은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·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.